

#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

## □ 사생활 침해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91건, 전체의 17.8%)

-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인 사인(私人)의 초상, 성명, 개인 간 사적인 통신 내역,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.
-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한 내밀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유명인의 가족은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습니다. 보도 논점과 무관한 유명인 가족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, 이를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조(사생활 보도 등)

-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, 성명, 음성,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(「헌법」 제17조, 「언론중재법」 제5조제1항).
-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(「헌법」 제18조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6조제1항).

## □ 명예훼손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27건, 전체의 5.3%)

- 언론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2조(명예훼손 금지)

-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(「헌법」 제21조제4항, 「형법」 제307조제2항).
-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(「형법」 제307조제1항).
- ③ 언론은 사자(死者)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(「형법」 제308조)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 □ 범죄사건 보도 등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4건, 전체의 0.8%)

-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초상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보도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피의자나 피고인의 초상 및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경우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.
-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야 합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3조(범죄사건 보도 등)

-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(혐의자, 용의자 포함. 이하 같다)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,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(「헌법」 제27조제4항,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).
-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).
-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·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(「헌법」 제27조제4항).

## □ 차별 금지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115건, 전체의 22.4%)

- 국적·나이·장애 등에 따른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·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,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 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은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0조의2(차별 금지)

- ① 언론은 인종, 국적, 지역, 성별, 종교, 나이, 육체적·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.
-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, 인종, 국적, 지역, 성별, 종교, 나이, 육체적·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[참고]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현황

- 주요 시정권고 표현 : 눈먼, 결정(선택) 장애, 장애를 앓다, 병어리 냉가슴, 외눈박이, 절름발이 등의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
- 수용사례: 장애차별 <sup>1</sup>표현을 삭제 하거나 <sup>2</sup>유사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.  
또는 <sup>3</sup>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대표적

사례	시정권고 전	시정권고 후
①	검찰, 지적장애 앓는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	검찰,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
②	한국형차기구축함(KDDX) '결정장애' 걸린 방사청... 속 타는 HD현대.한화오션	한국형차기구축함(KDDX) 결정에 '우유부단' 방사청 ... 속 타는 HD현대.한화오션
③	'눈먼 돈' 된 실업급여?... 부정수급 300억 넘겼다	줄줄 새는 실업급여... 부정수급 300억 넘겼다

-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,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는 자살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-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,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4조(자살 보도)

-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,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
  2.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,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
  3.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
-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,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[참고] ‘극단적 선택’ 관련 시정권고**

- **극단적 선택** :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유사한 처지의 독자들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음
- **수용사례** :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‘사망’ 혹은 ‘숨지다’와 같은 객관적 표현 권장

사례	시정권고 전	시정권고 후
①	21일 서천 장항읍 70대 남성 목 매 <b>극단적 선택</b>	21일 서천 장항읍 70대 남성 <b>숨진 채 발견</b>
②	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... 남편 가족 살해 후 <b>극단적 선택</b> 추정	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... 남편 가족 살해 후 <b>사망</b>

## □ 기사와 광고의 구분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89건, 전체의 17.3%)

-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,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위원회는 의료법 등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·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·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 등의 정보를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20조(기사와 광고의 구분)

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).

## □ 기사 제목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33건, 전체의 6.4%)

- 기사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21조(기사 제목)

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재난 보도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19건, 전체의 3.7%)

- 국가적 재난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초상 및 신상정보를 상세히 공개 하거나 사건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1조(재난 보도)

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폭력 묘사 등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16건, 전체의 3.1%)

- 가학적·피학적인 내용,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혹은 과도한 공포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6조(폭력 묘사 등)

언론은 가학적·피학적인 내용,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충격·혐오감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14건, 전체의 2.7%)

-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.
-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7조(충격·혐오감)

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,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범죄 묘사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2건, 전체의 0.4%)

-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의 음란성, 포악성,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경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- 일반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우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2조(범죄 묘사)

- ① 언론은 음란성, 포악성,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보도 윤리 (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2건, 전체의 0.4%)

-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사실 관계에 대한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
###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0조(보도 윤리)

-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